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036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항의 체계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내용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② (생략)</p> <p>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신설></p> |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p> |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p> |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4
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로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p> <p>①~② (생 략)</p> <p>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설></p> |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u></p> |